## 조선봉건왕조후반기 품계제도문란에 대한 몇가지 분석

양 영 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아직도 과학적으로 해명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권 35폐지)

봉건사회에서는 소수 특권관리들이 벼슬을 독차지하고 높은 품계와 관직을 가지고 국가의 권력을 장악통제함으로써 국왕의 중앙집권적통치체제를 뒤받침해주고있었다.

이 글에서는 15세기에 째여있던 품계제 도가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문 란하게 된 원인과 실태에 대하여 자료적 으로 론증함으로써 조선봉건왕조후반기 관 료질서체계의 면모를 밝히려고 한다.

조선봉건왕조후반기 품계제도가 문란하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먼저 16세기말에 들어서면서 정계에 새로 진출한 신진 관료(사림)안에서의 당쟁으로 인하여 관료질서체계가 심히 흐려지기 시작하였기때문이였다.

1575년부터 시작된 봉건통치배들사이의 당파싸움은 조선봉건왕조말기까지 근 300 년동안이나 지속되였다.

사림세력인 신진판료들은 정계에 진출 하여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 당파싸움 을 일삼으면서 저마끔 벼슬품계와 관직 을 독점하여 국가권력을 독차지하려고 날 뛰였다.

당시 당파싸움은 리조정랑자리를 독차 지하고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 삼사의 벼슬자리를 틀어쥐며 그것을 절대로 다른 당파에 넘겨주지 않기 위한 추악한 싸움 이였다.

리조정랑은 5품벼슬이지만 봉건왕조의 관리들을 임명하는 청요직자리였으며 삼 사의 벼슬자리는 국가정책수립에서 매우 중 요한 관직들이였다.

리조정랑자리는 비록 품계는 높지 않았지만 관리들을 선발, 임명하는 청요직으로서 그 자리를 어느 당파가 차지하는가에 따라 권력을 독차지할수 있었다. 뿐만아니라사헌부와 사간원도 중요벼슬자리의 하나로서 국가관리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관청이였다.

사헌부와 사간원은 흔히 량사라고 하였으며 그 관리들의 회합을 합좌라고 하였다. 량사의 관리들은 관리들의 임명과 정책수립에서 서경(동의수표)하는 특권을 가지고있었을뿐아니라 대간으로서 국가정치를 시비하는 언관의 직무를 맡았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하여 봉건왕조안에 서는 당파싸움이 그칠새 없었으며 15세기 엄격하던 품계제도를 문란시키는 결과를 가 져왔다.

조선봉건왕조후반기 품계제도가 문란 하게 된 원인은 다음으로 이 시기 상품 화폐관계가 급속히 확대된것과도 관련되 여있었다.

17세기 중엽경에 발생한 상품화폐관계는 봉건관료질서체계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17세기 후반기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금속화폐가 전국적으로 류통되게 되였으며 상업이 급속히 발전하게 되였다.

당시 상품화폐관계의 발전으로 하여 량 인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령락되였으며 반 면에 봉건통치배들은 이를 계기로 더 많 은 재부를 차지하기 위하여 고리대착취를 강화해나갔다.

《숙종실록》권62 44년 9월 경인조에 의하면 《혹은 달마다 리자를 받는 관계로 한해가 채 되기 전에 빚이 배로 늘어나는가하면 곡식이 귀할 때에는 쌀 1말을 1량으로 값을 쳐주고 가을에는 2량으로 처받

는데 그것을 쌀로 환산하면 5~6말이나 되니 이러고서야 가난한 백성들이 어찌 곤 궁하지 않을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볼수 있는것처럼 화폐를 착취수단으로 틀어쥔 지배계급은 종래의 고리대착취와 화폐롱간으로 2중3중의 고리대착취를 하 였다.

18세기 중엽에 보다 확대된 상품화폐관 계에 의하여 당시 지배계급내부에서는 특 권적지위를 표시하던 품계와 관직까지 파 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였다.

1750년 6월 지돈녕부사 리종성은 국왕에게《백성들중에서 특히 부유한 지주나 록을 먹는자를 제외하면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량반이 가장 많고 또 가장 가난합니다.》라고 하면서 량반이 보통농민처럼 직접 농사를 하면 그에게는 당장에 한정권농(限定勸農)의 첩지가 내려오게 되니 그들은 차라리 굶어죽는 고생을 참을지언정 수공업, 상업, 농업의 어느 하나도 할수 없는것이라고 하면서 당시 량반의 생활을 개탄하였다.\*

\*《영조실록》 권71 26년 6월 계사

조선봉건왕조후반기 품계제도의 문란한 실태는 첫째로, 품계제도의 웃마디와 아래 마디계선이 명확하지 않은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품계제도가 째여있던 15세기에는 특권 량반관리들만이 주요중앙관청의 품계인 정 직계와 그에 해당한 관직을 받고 국가관 리운영을 맡아 수행하였다. 특히 소수 특 권관료들만이 받게 된 정3품이상 당상관 의 품계와 관직은 더욱 그러하였다.

임진조국전쟁시기부터 시작된 품계의 람 발은 17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보편화되 였다.

1600년 2월 사간원은 국왕에게 《병란이일어난 이후로 군량을 마련하기 바빠서 구차스레 만들어낸 새 법을 이루 다 적을수 없습니다. 그중에도 7품이하의 무관이 쌀과

콩을 각각 3섬씩 중앙관청에 바치면 즉시 6품을 받게 되는데 이런 길이 한번 열려지자 벼슬길이 혼잡스럽게 된다는 비난이나오고있습니다. 더구나 6품의 관직을 팔아서 6섬의 곡식을 구하게 되니 소득이 적고 손실이 더 많아서 공론들이 죄다 합당치 않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집행하지 말도록 하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임진조국전쟁시기 군량을 마련할 목적밑에 일반출신들도 식량을 바치면 품계의 아래마디를 쉽게 넘어서게 되였다 는것을 보여주고있다.

1610년 4월 병기주조도감에서 제의하기를 《도감의 세칙에 〈동쪽반렬과 서쪽반렬의 실지 6품이상의 관리가 구리 200근을 바치면 당상판으로 올린다.〉라고 한데 대하여 임금의지시가 내렸습니다. 요즘 군공을 세우고 주부벼슬을 하는 변응남과 사과 류례룡 등이 각각 구리 200근을 바쳤습니다. 세칙대로 실행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자 국왕이승인하였다.\*

\*《광해군일기》 권139 11년 4월 병자 우의 자료에서 찾아볼수 있지만 주부(종 6품)벼슬을 하고있던 변응남과 사과(정6 품) 류례룡 등이 각각 구리 200근을 바친 대가로 국왕은 당상관품계를 받는것을 허 락하였다. 이것은 당시 15세기 엄격하던 품 계제도가 점차 문란해지고있었다는것을 시 사해주고있다.

16세기에도 이것과 류사한 현상들이 일부 나타났지만 17세기처럼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조선봉건왕조후반기 품계제도의 문란한 실태는 둘째로, 품계제도의 한품서용제가 흐려진데서 찾아볼수 있다.

한품서용제는 신분에 따라 오를수 있는 품계를 한정해놓은 제도였다.

15세기 일반출신(기술관)들은 정3품 하 인 통훈대부까지밖에는 오를수 없었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한

계가 문란되여 심지어 당상관의 품계에도 오르게 되였다.

1615년 7월 사헌부에서는 관리들의 품계질서에 대하여 《근래에 와서는 보잘것없는 공로를 가지고 대뜸 당상관으로 올려주기때문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한심하게 생각해온지 오랩니다.》라고 국왕에게 제기하면서 5품관과 당상관의 등급이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지난번에 임명한 리승, 심현, 김류, 리충립, 리종일, 송안정등에 대한 품계를 고쳐 임명하자고 하였다.\*

\*《광해군일기》 권80 6년 7월 정축 이것은 한품서용제가 매우 째여져있던 15세기에 전혀 볼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 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15세기에 품 계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궁, 준직, 순 자직제도를 제정하여 기술관 등 일반출신 관리들이 품계의 웃마디를 넘어서지 못하 게 하였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서면서 15세기 엄격해졌던 품계제도가 점차 문란되여 특권 신분충만이 아니라 일반출신관리들도 품계의 웃마디를 쉽게 넘어 당상관급에 올라서는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였다.

그렇기때문에 1787년 5월 경상우도 암행어사 리서구는 량인장정이 줄어들기는 오늘과 같은 때가 없었다고 하면서 《그것은 대개 명분이 점점 어지러워지고 귀천의 구분이 없는데서 온것이다.》라고 개탄하였다.\*

\*《정조실록》 권23 11년 5월 경오

18~19세기에 와서 일반출신들도 정직계로의 진출이 상당한 정도로 증대되였다. 이 시기 중인들에 대한 신분적제한이 약화되고 벼슬길이 넓어져 중인과 량반과의차이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한품서용제는 더욱 흐려졌다. 그들은 원래 역관, 의관, 천문관, 지관, 산관, 튤관, 화원, 도류,

악공 등의 벼슬만을 할수 있었다.

그러나 18~19세기에 와서는 이러한 신 분적제한들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 기 일반출신들은 종전의 한계를 크게 벗 어나 정직동서반계에 임명되였다.

1793년 5월 봉건국가는 일반출신들에게 문관과 무관의 벼슬에 임명할데 대한 조 치를 취하였다.

이때 일반출신들도 고을원의 벼슬에 임 명되였는데 이것은 이전시기에 비해 더 증 대되였다.

본래 문무량반들이 고을원의 벼슬을 받는 경우 음관직으로나 생진과로 벼슬을 한자들은 반드시 3조(호조, 형조, 공조)와 의금부, 장예원, 사헌부, 한성부 등의 관직을 지내야만 임명되였다. 특히 문무관리들은 6품이상의 실직벼슬을 경과한 다음에야 고을원으로 추천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일반출신들이 실직 벼슬인 찰방을 지내면 문무관들처럼 관직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고을원의 벼 슬을 할수 있었다.

1607년 8월 《중인들은 찰방벼슬(종6품)을 지낸 다음에 고을원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숙종실록》 권31 23년 8월 경술 18세기이후에 일반출신들이 고을원을 하 였다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1712년 1 월 의관인 류상이 합천고을원으로 임명된 사실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승정원일기》숙종 38년 정월 9일 뿐만아니라 일반출신들은 문관들이 받 고있던 증직벼슬까지 받을수 있었다.

증직벼슬은 조선봉건왕조에서 당상관인 종2품이상 특권관료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나 특별히 지배계급들이 내 세우는 관리들에게 그가 죽은 후 주는 벼 슬이였다.

15세기에는 일반출신들에게 증직벼슬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8세기에 와서 의

관, 역관 등에게 증직벼슬이 허용되였다.

1713년 2월 의관, 역관 등 일반출신들에 한해서 증직벼슬을 주는 문제가 론의되였는데 이때 국왕은 《지난번에 의관 박성서의 증직벼슬을 보니 참판, 총부(총관-인용자)로서 주었는데 나 역시 피이하게 생각하였다. …가설동지도 부당하니 좌윤, 우윤을 허락한다.》라고 말하였다.\*

\*《숙종실록》권53 39년 2월 계축

우의 자료를 통하여 일반출신들은 17세기에는 증직벼슬로서 6조의 참판(종2품), 총부(총판)를 받을수 있었던것이 18세기이후에는 한성부의 좌윤, 우윤(종2품)벼슬직첩도 받을수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17세기이후 일반출신들이 정직계에 들 어오는 현상은 막을수 없는 현상으로 되 였다

15세기에는 일반출신들중 기본업에 특별히 정통한자들에게 정직동반계를 줄데 대한 문제가 론의된적은 있었으나 당시 특권관료들의 배타적인 신분관점으로 하여 끝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특히 《경국대전》에도 명백히 일반출신들에게 증직벼슬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8~19세기 일반출신들은 증직 벼슬을 받았다. 당시 일반출신들이 문무판 직을 받을수 있었던것은 신분관계의 변화 에 맞게 엄격해졌던 품계제도의 적용범위 가 넓어졌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조선봉건왕조후반기 품계제도의 문란한 실래는 셋째로, 엄격하던 적서차별정책이 약화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15세기 법전인 《경국대전》에 의하면 2 품이상 문무관리 량인출신의 첩의 몸에서 난 자손은 정3품까지로, 천인출신몸에서 나온 자손은 정5품까지로, 6품이상 관리 로서 량인출신의 첩의 몸에서 난 자손은 정 4품까지로, 천인출신의 첩의 몸에서 난 자 손은 정6품까지로 제한한다고 규정되여있 었다. 1593년 2월 제정된 호조의 《납속사목》에 의하면 서얼은 15섬의 낟알을 내면 과거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며 20섬을 내는 경우에는 그 자손들도 과거시험에 응시할수 있었다.

서얼출신들의 이러한 납미허통은 17세기말에 이르러서는 막을수 없는 사회적현 상으로 되였으므로 당시 통치배들속에는 그 것을 금지할데 대한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였다. 이리하여 17세기말에 그것은 폐지되고말았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서자들속에서는 적 서차별을 반대하는 항의와 불만이 더욱 높 아져 그것을 완화할데 대한 의견들이 자 주 제기되였으나 그것은 완고한 특권관료 들의 반대에 부딪쳐 오래가지 못하였다.

1613년 12월 지평 임상원과 박태상이 제 의하기를 《나라의 벼술품계는 정한 제도가 있고 선비와 일반사람들의 명분은 절도가 있는것입니다. 근래에 금령이 엄격하지 않고 통제가 점차 풀려서 지어는 민간의 직무없는 부류들과 서자인 미천한 신분들이 간혹 3품이상의 벼슬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남편의 덕이 안해에게 미쳐서 모두 작위를 봉하는 임명장을 받고는 바깥출입을 할때 가마를 타고다닙니다. 벼슬이 분수에 지나치고 란잡하기가 극도에 달했습니다.》라고 하였다.\*

\*《현종실록》 권21 13년 12월 계미일 자료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통치배들 속에서는 나라의 벼슬품계는 정한 제도가 있고 선비와 일반출신들의 명분은 절도가 있다고 하면서 근래에 들어와 이러한 법 도가 흐려져 직무가 없거나 심지어 미천 한 서자까지도 3품이상의 벼슬품계를 받 는다고 볼부은 소리를 하였다.

18세기 중엽이후에 와서 적서차별이 희 미해진것은 서자들이 중요한 벼슬관직인 청 요직을 차지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이 시기 서자들은 적자들만이 차지할수

있었던 특정한 벼슬에도 임명되였다.

1772년 8월 서얼들인 려구주를 지평(정 5품)에 임명한 사실\*<sup>1</sup>과 윤밀, 오준근을 정 언(정6품)에 임명한 사실\*<sup>2</sup> 등은 그 대표 적인 실례로 된다.

> \*1《영조실록》권11 948년 8월 정축 \*2《정조실록》권7 3년 3월 신해

우의 자료들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18 세기이후에 와서 서얼들은 일반벼슬은 물 론 지어 사헌부의 지평, 사간원의 정언과 같 은 봉건국가의 요직에도 등용되였다.

1777년 3월 호조, 병조, 례조의 판서들이 토의하여 작성한 《서류소통절목》에 의하면 서자들은 문관직으로서 종9품부터 정3품 당상관의 벼슬을 할수 있었으며 무관직은 당상관 종2품벼슬에까지 임명될수 있었다.

당시 그들이 받을수 있는 중앙관직은 호조, 형조, 공조의 참상관관직들인 정랑, 좌랑, 겸교수, 별제 등의 벼슬과 대체로 정5품부터 종9품에까지 해당되는 시, 감, 원 등으로서 당하관의 벼슬자리가 훨씬 넓어졌다. 지방관직으로서는 현령, 군수의 벼슬과 도호부사, 목사 등 종5품부터 정3품 당상관벼슬이였다.

서자들은 이로부터 사회적지위가 높아 져 재산의 상속까지 받을수 있었다. 원래 서 자들은 토지와 가옥, 노비를 비롯한 재산 을 상속받을수 없었으나 18세기에 들어와 서 이러한 규정들은 없어지기 시작하였다.

1778년 3월 국왕은 리조와 병조에 《 · · · 우리 나라에서는 나라의 규범을 세울 때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문벌을 앞세우면서 서자들을 중요한 벼슬자리는 승인하지만 좋은 벼슬자리는 승인하지 않을데 대하여 이미 옛사람들이 참작하여 정해놓은 의논이었다. · · · · 하물며 숱한 서자로 말하면 그 수는 몇만명정도가 아니다. 그들속에 나라에필요한 뛰여난 인재가 왜 없겠는가. 리조와 병조의 관리들은 그들의 앞길을 틔워주고 장려하여 등용할 방도를 대신들과 토

의하고 특별히 대책을 강구할것이다.》라고 지시하면서 리조에 세칙을 만들라고 하였 다. \*

\*《정조실록》권3 1년 3월 정해일 우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국왕은 직접 리조와 병조에 지시를 내려 서자들을 재 능에 따라 등용할데 대하여 토의하도록 하 였다.

봉건국가는 《서얼소통》을 반대하는 서얼들의 반항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그들속에도 뛰여난 인재가 있으면 그들도 역시 량반의 피줄을 타고난 자손이라고 하여 일부관직에 등용하였던것이였다.

이와 같이 적서차별이 흐려지면서 서자들이 이전시기에는 받을수 없었던 품계들도 가질수 있었다는것은 품계제도의 문란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15세기 지방차별정책으로 나라의 정치는 더욱 혼란에 빠졌고 국력도 심히 약화되였다. 17세기이후부터 지방출신세력들의 반항과 항의에 큰 불안을 느낀 봉건통치배들은 그들에게 일부 정직계를 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1633년 12월 함경도 단천에서 사는 렴우혁을 정5품벼슬인 사헌부 지평으로 임명한 사실, 1691년 12월 조식에게 홍문관부수찬(종6품)의 벼슬을 준 사실, 1709년 3월 어사 심주현을 평안도에 보내여 평안도 강변(압록강) 7개 고을에서 무예재주를시험하고 무과합격자 27명을 선발한 사실등은 그에 대하여 잘 알수 있게 한다.

17세기이후부터 서북지방사람들도 사헌 부와 홍문관을 비롯한 정직계의 요직벼슬에 임명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벼슬관계에서 지방차별이 상당히 완화되여 이전시기 토관 계벼슬만을 가지고있던 그들이 서반계뿐아 니라 정직동반계도 오를수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 들어 서면서 품계제도가 문란해짐으로써 봉건 적통치체제는 더욱 약화되게 되였다.